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 4 차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57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제221695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3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5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23.

3. 회 부 일 : 2026.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

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우리나라도 시·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안 제10조제4항 신설 등)

개정안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하며, 이하-----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자동차 소유자 중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

현행	개정안
④ ~ ⑥ (생략)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⑨ (생략)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생략)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 ----- ----- ----- ----- ----- ----- ----- ----- ----- -----제7항까지를-----.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 ----- 이륜자동차번호판(「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

현행	개정안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	-----제10조 제4항 및 제6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 28. (생략)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 8. (생략) 제8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 ----- ----- 2. ~ 28.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조제10항을----- ----- ----- 2. ~ 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10조제5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2. 제10조제6항(제10조제8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현행	개정안
는 제외한다) 3. ~ 11.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 24. (생략) ⑤·⑥ (생략)	----- 3. ~ 11. (현행과 같음) ④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8항에서----- 3. -----제10조제8항에서----- ----- 4. ~ 2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제80조의2¹⁾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

1)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²⁾.

하지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방지장치의 부착 여부만 관리할 뿐, 도로 위에서 해당 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 없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³⁾.

이에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취득자

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문기사, 「음주운전 열 중 넷 재범..처벌강화법은 국회서 낮잠」, 이데일리, 2024.8.6일자

차량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를 명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2216959)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특수번호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수번호판을 기존의 등록번호판에 추가하여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체하여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16959호)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9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3(벌칙) ① ~ ③ (생략) <신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 특수번호판 기준 및 교체 절차·방법, 제7항에 따른 운행기록----- -----. 제148조의3(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안대로 의결될 경우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한 때에는 등록번호판 부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089호 및 제2118744호)이 20대와 21대에 각각 발의된 바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특수번호판이 도입될 경우 디자인, 도입 방법, 시기 등은 하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